

방송시설장비 유지 보수 계약서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경리관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(주)에이치엔엠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간에 다음과 같이 방송시설 장비(이하 “방송시설장비”이라 한다)의 유지 보수 계약(이하 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(원칙)

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“계약”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,

제2조(목적)

본 “계약”은 “갑”이 방송시설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할수 있도록 일체의 예방점검 및 유지 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한다.

제3조(유지보수대상)

본 “계약”의 유지 보수 대상은 “갑”이 사용하고 있는 방송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계약금액) 계약금액은 금1,944,000원(금일백구십사만사천원)으로 한다.(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)

제5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단.당해년도 재계약이 없을 시에는 재계약 시까지 전년도 “계약”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.
- ② “계약”의 중도해지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되, “을”의 귀책사유에 의한 때에는 “갑”이 일방 해지할 수 있다.

제6조(유지 보수비 및 지급방법)

- ① 유지 보수비라함은 “방송시설장비등”의 유지 보수에 투입된 여비,인건비를 말한다.
- ② 유지 보수비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고, “을”은 당월의 유지 보수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초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“갑”은 청구월 말일 이내에 전월 유지 보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월 유지보수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162,000원(금일십육만이천원)으로 한다.
- ④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당월의 유지 보수비는 1개월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.

제7조(유지 보수)

- ① 유지 보수는 장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점검과 유지 보수 기간 중 발생한 장애보수를 위한 보수를 포함한다.
- ② “을”은 제3조의 “방송시설장비”가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“갑”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월1회 이상의 정기점검(예방점검)을 실시하여야 하며 “갑”의 긴급요청으로 유지 보수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예방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장애보수는 “갑”의 전화나 서신(전자우편등 포함)에 의해 행하여지며, 장애통보를 받은 후 “갑”의 “방송시설장비”가 있는 장소까지 5시간 이내에 도착하여야 한다. 단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이용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통하여 장애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 장애통보를 받으면 “을”의 유지 보수 직원이 “갑”의 시스템이 있는 장소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장애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.
- ⑤ 예방점검 및 장애보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부품비용을 제외한 “갑”의 추가비용 없이 실시한다.

제8조(법정근무시간외 유지 보수)

- ① “갑”은 필요에 따라 “갑”의 법정근무시간외에도 “을”에게 유지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② “을”의 직원이 “갑”의 법정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유지 보수를 실시한 경우 시간외 유지 보수로 보지 아니하며, 제반 경비는 “을”이 부담한다.

제9조(유지 보수 결과통보)

- ① “을”은 예방점검 또는 장애보수 완료시 “갑”에게 이를 통보하고, “갑”입회하에 시험 가동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인계한다.
- ② “을”은 유지 보수 직원이 수행한 모든 보수정비 작업내용을 소정서식으로 작성하여 “갑”의 직원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1부는 “갑”이 보관한다.

제10조(보안책임)

- ① “을”은 본 “계약”과 관련하여 “갑”으로부터 알게된 기밀사항이나 일반사항은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러한 일이 발생한 때에는 본 “계약”을 해지하고 “을”은 민.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② “을”의 유지 보수 직원은 통제구역 출입 등 “갑”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“갑”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“을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지체상금)

예방점검 및 장애복구를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“갑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다음의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 보수비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.

$$\text{지체상금} = \text{월 유지 보수비} * 1/240 * \text{지체시간}$$

제12조(권리의무의 양도금지)

“갑”과 “을”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“계약”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.

제13조(계약의 변경)

대상장비의 변경 또는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.

제14조(계약의 해지)

“갑” 또는 “을” 어느 일방이 본 “계약”을 위배함으로써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장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방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본 “계약”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5조(관할법원)

이 “계약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“갑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.

제16조(계약의 해석)

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갑”과 “을”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,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“갑”의 해석에 따른다.

②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“계약”에 관한 법령, 예규 등을 준용한다.

제17조(변경사항등의 통보)

“을”은 “계약” 체결 이후 주소,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 보수비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“갑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“을”의 책임으로 한다.

제18조(계약서)

위 “계약” 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 과 “을” 이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.

2014년 11월 일

“갑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경리관 정 옥 진 (인)

“을” 회사명 : (주)에이치엔엠

주 소 :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26-23(4층)

대 표 : 성 기 용 (인)